

제221회 정례회
2003. 12. 22.

심 사 보 고 서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2월 12일

○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3. 12. 19 :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정 호 성)

가. 제안이유

-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하고(제3조)
-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을 당직근무 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직수당 1인 1회당 30,000원의 산정근거와 당직근무시간과 형태가 다른 토요일 당직과 일요일·공휴일 일직에 대하여 평일과 차등 없이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166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하고(제3조)
-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제4조)

3. 의안전문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 자율결정

<개선내용>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